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82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박주민 · 김우영 · 김남근
민병덕 · 전현희 · 이수진
김동아 · 임미애 · 전진숙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11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약 300명이 다치는 심각한 수준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함께, 최근 SPC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등, 연이어 벌어진 참사는 우리에게 산업안전의 냉혹한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주었음.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현재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일부 부서가 나누어 맡고 있으나, 전문성 · 일관성 · 적시성 모두 부족하여 효과

적인 예방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영국은 보건안전청(HSE),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노동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해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음. 이러한 선진사례는 우리에게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독·지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감독·지도,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술지원 등 산업 안전·노동자 보건에 관한 사무, 재활을 통한 원직 복귀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둔다.

③ 산업안전보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산업안전보건청장의 행위 또는 산업안전보건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청장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u>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u> 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고용노동부) ① ----- ----- ----- ----- <u>산업재해보상보험</u> ----- ----- -----.
<신 설>	② <u>산업 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의 수립 · 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 감독 · 지도,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 산업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발간,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기술 지원 등 산업 안전 · 노동자 보건에 관한 사무, 재활을 통한 원직 복귀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둔다.</u>
<신 설>	③ <u>산업안전보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u>

	<u>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u>
--	---